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20.12.29 개정]

1. 감면업종[2008.12.26 개정]

가. 작물재배업 [2008.12.26 개정] 나. 축산업 [2008.12.26 개정] 다. 어업 [2008.12.26 개정] 라. 광업 [2008.12.26 개정]

마. 제조업 [2008.12.26 개정]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08.12.26 개정]

사. 건설업 [2008.12.26 개정]

아. 도매 및 소매업 [2008.12.26 개정]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8.12.26 개정]

차. 출판업 [2008.12.26 개정]

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14.12.23 개정]

타. 방송업 [2008.12.26 개정]

파. 전기통신업 [2008.12.26 개정]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08.12.26 개정]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증개업은 제외한다] [2018.12.24 개정]

너. 연구개발업 [2008.12.26 개정]

더. 광고업 [2008.12.26 개정]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08.12.26 개정]

머. 포장 및 충전업 [2008.12.26 개정]

버. 전문디자인업 [2008.12.26 개정]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008.12.26 개정]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2010.01.01 개정]

저. 엔지니어링사업 [2008.12.26 신설]

처. 물류산업 [2008.12.26 개정]

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20.06.09 개정]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010.01.01 개정]

파.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008.12.26 개정]

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수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016.12.20 개정]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동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동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010.01.01 개정]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08.12.26 개정]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08.12.26 개정]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12.27 개정]

모. 클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10.01.01 신설]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이 하는 사업 [2010.01.01 신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2018.12.11 개정]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010.12.27 신설]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010.12.27 신설]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10.12.27 신설]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3.01.01 신설]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4.01.01 신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 [2021.04.20 개정]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17.12.19 개정]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2015.12.15 개정]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014.12.23 신설]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015.12.15 신설]

루. 임업 [2016.12.20 신설]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2020.12.29 신설]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2020.12.29 신설]

2. 감면비율. 다만, 제1호 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감면 비율은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2020.12.29 단서신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10.01.0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2010.01.0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2010.01.0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5[2010.01.0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10.01.0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2010.01.01 개정]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7.12.19 신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2017.12.19 신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2017.12.19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16.12.20 개정]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2016.12.20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2016.12.20 개정]

3.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2016.12.2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

복식부기의무자

2106년 귀속부터 추계신고시 감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임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범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20.12.29 개정)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2018.05.29 신설)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018.05.29 신설)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범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2016.12.20 신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2016.12.20 신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임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2019.12.31 개정)

1. 광업(2019.12.31 개정)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9.12.31 개정)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019.12.31 개정) 4. 건설업(2019.12.31 개정)
5. 통신판매업(2019.12.31 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2019.12.31 개정)
7. 음식점업(2019.12.31 개정)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종은 제외한다. (2019.12.31 개정)

가. 비디오를 감상실 운영업(2019.12.31 개정) 나. 뉴스제공업(2019.12.31 개정)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2019.12.31 개정)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종(2019.12.31 개정)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종은 제외한다. (2019.12.31 개정)

가. 변호사업(2019.12.31 개정) 나. 변리사업(2019.12.31 개정) 다. 범무사업(2019.12.31 개정) 라. 공인회계사사업(2019.12.31 개정) 마. 세무사업(2019.12.31 개정)
반. 수의업(2019.12.31 개정)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시무소를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종(2019.12.31 개정)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2019.12.31 개정)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일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2019.12.31 개정)

12. 사회복지 서비스업(2019.12.31 개정)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자영예술가(2019.12.31 개정) 나. 오락장 운영업(2019.12.31 개정)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2019.12.31 개정)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2019.12.31 개정)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2019.12.31 개정)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종(2019.12.31 개정)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19.12.31 개정) 나. 이용 및 미용업(2019.12.31 개정)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9.12.31 개정)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2019.12.31 개정)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19.12.31 개정)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범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범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범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05.29 개정)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충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범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5.29 신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2018.05.29 신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임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접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접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범인세(2017.12.19 신설)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8.05.29 단서개정)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50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00

⑧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5.29 항번개정)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5.29 개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1. 학생·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암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이하인 경우(2017.12.19 신설)

2.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017.12.19 신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범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범인을 설립하는 경우(2010.01.01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2001.12.29 개정)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⑫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8.05.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2021.02.17 개정]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2015.02.03 개정]
2. 삭제[2000.12.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2020.12.29 개정]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2017.02.07 신설]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7.02.07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2005.02.19 법령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2010.12.30 개정]
3. 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2015.02.03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2006.02.09 개정]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00.12.29 개정]
-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3 개정]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2012.02.0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조의 2 [제조업의 범위[2017.03.17 신설]]

영 제5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7 신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2017.03.17 신설]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17.03.17 신설]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7.03.17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조의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2018.03.21 신설]]

영 제5조 제12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20.03.13 개정]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2020.03.13 개정]
2.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18.03.21 신설]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8.03.21 신설]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2018.03.2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어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워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터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 이란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③ 삭제[2009.02.04]
- ④ 삭제[2009.02.04]
-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2016.02.05 개정]
- ⑥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4.02.21 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2001.12.31 신설]
 2. 전기통신업[2010.02.18 개정]
 3. 연구개발업[2010.02.18 개정]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0.02.18 개정]
 5. 영화·비디오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2010.02.18 개정]
 6. 전문디자인업[2008.02.22 신설]
 7. 오디오 및 원판 녹음업[2010.02.18 개정]
 8. 광고업 중 광고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2018.02.13 개정]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02.18 신설]
 10. 방송업[2010.02.18 신설]
 11. 정보서비스업[2010.02.18 신설]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2014.02.21 신설]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6.02.05 신설]
- ⑦ 법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8.02.13 신설]
-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2017.03.17 제목개정)]

영 제6조 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2017.03.17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① 삭제[2017.03.17]
- ② 삭제[2015.03.13]
- ③ 삭제[2015.03.13]
-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정업·분업·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2020.03.13 개정]
- ⑤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2015.03.13 개정]
- ⑥ 삭제[2015.03.13]
- ⑦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2021.03.16 개정]
- ⑧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2014.03.1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2021.02.17 개정]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2015.02.03 개정]
 2. 삭제[2000.12.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2020.12.29 개정]
 4.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2017.02.07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③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21.02.17 개정]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형주점업, 무도유형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형음식점업 및 관광유형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2010.02.18 신설]